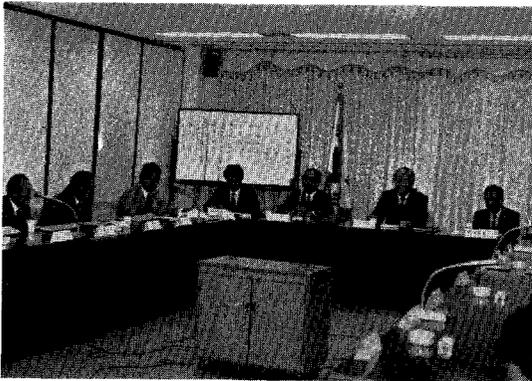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91년 제4차 이사회 개최 자조금제도 사업규정 확정, 정부에 제출 키로



본회 '91년 제4차 이사회가 지나 18일 오후 3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 협회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 심의로는 △'91년 수지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양계 자조금사업규정(안) △'91 한국양계 박람회 평가 등 이다.

자조금사업은 본회가 마련한 양계자조금사업규정을 정부에 제출하여 '92년 1월말 이내에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2월중에 개최될 정기총회를 통해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본회가 추진하게될 이 사업은 자체적립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업종별로 자조금사업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종별 남부 실적에 의거 참여농가에게만 수혜가 가도록 조치키로 합의하였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전 양계농가의 50%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통해 3~4년 내에 전 농가가 참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91한국양계박람회 평가를 통해 축산업계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였다고 보고 차후 개최될 박람회는 진행도중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농지조성 전용부담금 전액 면제 요청

본회는 지난 17일 농림수산부 공고 제91-62호에 의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산란청 공고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내 용
개정령 안	제52조의 2(부과기준)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 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 이하 같다)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이 감면되는 경우의 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제91-10호에 의한 산림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해 양계와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에 질의하였다.
본회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본회 의견	제52조의 2(부과기준)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 이하 같다)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이 감면되는 경우의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사 유 (본회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R협상 등 전면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하여는 규모를 확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많은 면적의 부지가 소요되며(전업규모인 닭 30,000수의 경우 최소한 7,200㎡ 이상이 소요됨) 이를 위한 농지전용이 불가피할 실정임. 2. 현행 규정상 대체농지조성비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 생활여건상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닭 10,000수 이상만 되어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일선 행정기관(허가청)에서 농가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대체농지조성비의 면제 또는 감면(50%)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농지조성비를 전액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음. 3. 전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양축농민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차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한다면 양축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생산비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에 가서는 많은 양축농민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것임. 4. 이상과 같은 사유로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정부의 축산구조조정 개선계획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리하여 관과 민간의 위화감만 조성될 우려가 있으니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업규모(30,000수) 양계장 시설을 위한 소요시설 및 부지면적 산출근거

구 분		부지(전용)	시설소요면적		적 요
		소요 면적	면적	산출근거	
계 사	육 추 사	491.40㎡	294.84㎡	294.84㎡ × 1동	* 계사면적은 건설부공고 제 57호에 의한 표준설계도상의 면적임.
	육 성 사	1,108.33㎡	665.00㎡	665.00㎡ × 1동	
	성 계 사	4,129.20㎡	2,477.52㎡	825.84㎡ × 3동	
	소 계	5,728.93㎡	3,437.36㎡		

부대	계분발효건조시설	1,145.78㎡	687.47㎡	계사면적의 20%	* 건축법상 건폐율 60%로 부지소요 면적 계산
	창고	286.45㎡	171.87㎡	계사면적의 5%	
시설	소계	1,432.23㎡	859.34㎡		
	합계	7,161.16㎡	4,296.70㎡		

강석부 부회장 '91 축산진흥시책 유공자 장관 표창



본회 강석부 부회장이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91 축산진흥시책 유공자 장관표창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91 축산시책 유공자의 영광을 차지한 강부회장은 5만여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키워오며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던 끝에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이 육계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산자 중심의 계열주체인 (주)서울인터를 탄생시켜 계열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본회의 육계담당 부회장의 중책을 맡아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육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노계 도태로 가격안정 도모키로

12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중순경 계란가격 폭락시 강제환우를

시켰던 계군들이 적극 생산에 가담해 현재 체화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란을 생산하는 고주령 노계를 도태함으로써 적정한 생산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과잉생산 억제 필요

12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구정대목을 앞두고 병아리 구입물량이 전무한 상태라 병아리가격 폭락과 계란가격이 조만간 떨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최근 등급별 계란가격차이가 좁혀지면서, 개선된 난가고시제도를 일부 계란상인들이 교묘히 이용, 대란에 비해 특란수집의 경우 생산농가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계열주체에서는 자체 부화·종계장 신설보다 기존 부화·종계장과의 계약관계를 도모하여 과잉생산을 억제하여 수급조절을 원활히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회 안성분회 사무실 이전

본회 안성분회(분회장 박승봉)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18일부터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284-1
- 전화: (0334)675-2113